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027,900	21	3,990,000
2	2,091,700	22	4,112,700
3	2,156,000	23	4,272,600
4	2,219,800	24	4,432,100
5	2,284,100	25	4,591,600
6	2,354,500	26	4,750,900
7	2,424,700	27	4,910,200
8	2,495,200	28	5,069,400
9	2,601,100	29	5,190,600
10	2,706,900	30	5,312,000
11	2,812,900	31	5,433,100
12	2,918,400	32	5,554,200
13	3,023,500	33	5,675,500
14	3,128,900		
15	3,252,500		
16	3,375,900		
17	3,498,700		
18	3,621,500		
19	3,745,100		
20	3,867,400		

비고

-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확정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796,000원
 -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027,100원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172,800원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2,4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확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86,5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